

8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일정안내

□ 교육과정

구분	업종	교육시간	교육대상	교육비
신규 채용자 교육	인천버스, 택시업체 버스(시내.전세) 택시(법인.개인)	2일 (16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새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운수종사자 (단 퇴사 후 2년 이내 재취업자 제외) 신규 모범택시 인가자 포함 	35,000원

□ 교육일정

※ 매월 25일 익월 교육 공지

구분	교육일정	비고
신규 채용자 교육	10일 ~ 11일	<교육 불가 대상자> 1. 타 지역 업체 종사자 2. 미취업자 3. 예약번호 미확인자 4. 마스크 미착용자 5. 37.5도 이상 발열자
	13일 ~ 14일	
	20일 ~ 21일	
	24일 ~ 25일	
	27일 ~ 28일	

□ 접수방법

인터넷 사전예약 후 현장 본인 확인(현장 본인 확인 시 예약번호 필수)

▶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(인터넷예약)주소: <https://www.int.or.kr/>

○ 교육장소

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(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)

○ 준비물

신분증, 운전자격증, 교육비(신용카드 결제 가능)

□ 교육대상 구분

○ 신규채용자 교육대상(인천 업체 취업한 운수종사자)

- 여객자동차(법인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 운송사업체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(운전업무 시작 전) 하는 자
- 여객자동차(법인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자

- ※ 정식등록기사가 아닌 경우(스페어기사 등)도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
 - 개인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 (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)
 - 개인택시 사업면허 신규 취득자 (신규 인가조건 교육)
- ※ 개인택시 중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및 일반(공무원 운전기사 등) 운전경력으로 신규 취득 및 양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

○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

- 여객운송사업체에 취업하여 신규채용자 교육이수 후 여객자동차 (법인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재취업의 경우 면제
- ※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및 일반(법인업체, 공무원 운전기사 등) 운전경력은 면제대상 경력에 해당사항 없음

○ 유의사항

-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다음해 부터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여객운송사업체에서는 신규채용자교육 확인(이수증 사본 또는 교육확인서) 및 여객자동차 운전경력(경력증명서) 등을 확인하여 신규채용자 교육대상
- 신규채용자 교육을 미 이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난 이후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신규채용자 교육 미 이수 상태로 운전 업무 중 적발될시 계속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

○ 행정처분내용

- 운송사업자 (법인택시, 시내, 시외, 전세버스)과징금
 - ▶ 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
- 운행정지(1차 5일, 2차 10일, 3차 15일)
-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

○ 문의사항 연락처

-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교학팀
- 전화 : 032) 554-8011~2 팩스 : 032) 554-8013

○ 협조사항

- 연수원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